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역입찰제도 개선, 적격심사항목 보완,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 업체 제재사유 추가, 정정공고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되어 지난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물량내역서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 설계변경이 불가능해 소규모 공사에서 경제적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재정경제부에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계약서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되도록”**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 1. 내역입찰제도 개선(영 제14조)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서, 물량내역서의 교부, 열람</li> <li>- 100억원이상은 교부대상</li> <li>- 100억원미만은 열람대상, 다만, 낙찰자에게 설계서, 물량내역서 교부</li> <li>-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열람, 교부</li> <li>※ 1억원 미만공사도 물량내역서 교부 (계약서에 내역서가 포함)</li> <li>○ 신기술·신공법등에 의하여 절감사유를 제출하도록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부된 물량내역서와 관계없이</li> <li>-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자가 직접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토록 함</li> </ul>

개정 사유

□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만 가능, 입찰 후 낙찰자에게만 교부

○ 다만, 추정가격 1억 미만 공사\*는 발주자가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서 교부없이 설계서만 열람토록 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영 제14조 제1항·제2항, 제7항)

\* 당초 1억원미만 공사는 그 건수(전체공사의 40~50%)가 많아 행정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완성공사보다는 유지·보수 등이 주류를 이루는 점을 감안하여 물량내역서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임  
-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에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여 소규모 시공자의 피해가 발생

⇒ 행정서비스 강화 및 영세 소규모 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

※ 건설산업규제 관련 규제개혁 차관회의('07.4.26) 의결사항 반영

□ 최저가낙찰제에 있어 '신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 \*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현행 내역입찰방식은 부적합(영 제14조제1항 및 제6항)

\* 신기술·공법 이외에 외국 신기술·공법, 업체의 노하우, 기존공법 등 모두 인정, 자재·장비 및 가시설 대체 허용(다만, 품질, 공기, 유지보수비용 등이 동등이상)

⇒ 교부된 설계서 및 입찰자의 기술제안내용(신기술·공법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산출한 물량과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는 순수내역입찰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참고)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li> <li>* 설계내역서 중 공종, 규격, 단위, 수량만 남기고 금액부분을 공란으로 제공</li> <li>○ 입찰참가자는 물량내역서에 금액을 기재한 후 입찰서와 함께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다만, 최저가입찰 대상공사(현행 300억원이상)의 경우로서 신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출이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 입찰자가 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li> </ul>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기관이 낙찰자에게만 물량 내역서*를 교부</li> <li>○ 낙찰자는 입찰금액에 맞게 물량내역서에 금액을 기재한 후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li> <li>○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는 직접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가자에게 열람 · 교부 (1억원미만 공사의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li> <li>○ 물량내역서에 금액을 기재한 후 착공계 제출시까지 제출토록 함</li> </ul>

2. 적격심사항목 보완 (제42조제5항)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내용에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추가</li> </ul>

개정 사유

□ 부정당업자제재사유 추가\*에 따른 근거규정을 명확화

○ 계약체결 후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공사),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용역)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1월

\* 부정당업자제제규정 신설(제76조제1항)



**Upkeep – 유지비**

He: "In a way, taking a wife is much similar to buying an automobile."

She: "How so?"

He: "The thing isn't the first cost. It's the upkeep."

남자: "어떻게 보면 아내를 갖는다는 건 자동차를 장만하는 것과 비슷한 데가 많아요."

여자: "어떻게요"

남자: "처음에 들이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비가 문제거든요."

「재미있는 영어이야기에 확 빠져들기」 중에서

### 3.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 업체 제재사유 추가 등(제76조 제1항)

현 행	개 정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3의2호 신설)</li> <li>○ 계약체결 후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공사),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용역)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제6호에 추가)</li> </ul>

#### 개정 사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07.5.17,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상생법의 규정을 과도하게 위반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제5항

제27조 (수·위탁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⑤중소기업청장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또는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적격심사를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심사항목 중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근거를 마련

\* 하도급관리계획

○ 공사의 경우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심사항목 중 하나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계약체결 후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음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007.3.5)

제53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 대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예) 100억이상 공사 적격심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 시공경험 · 기술능력 · 시공평가결과 · 경영상태 · 신인도	· PQ심사항목을 이용	70		
			(40)		
			· <u>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u>	·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4)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6)
			입찰가격		30

3-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세부기준 정비(제76조관련 규칙 [별표2])

현 행	개 정
<p>[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p> <p>1. ~ 4. (생략)</p> <p>5. <u>영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u></p> <p>가. · 나. (생략)</p> <p>8.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p> <p>가. ~ 라. (생략)</p> <p><u>&lt;신설&gt;</u></p> <p>9. (생략)</p> <p>10.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p> <p>가. <u>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u></p>	<p>[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영 제76조제1항제3호 또는 제3의2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u></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8.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1월)</u></p> <p>9. (생략)</p> <p>10.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p> <p>가. <u>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u></p>

현 행	개 정
<p>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1년)</p> <p>나. <u>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u>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6월)</p> <p>11. ~18.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p> <p>나. <u>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u> -----</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11. ~18. (생략)</p>

**개정 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세부기준을 정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07.5.17 공포)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상생법의 규정을 과도하게 위반하는 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 제3의2호 개정내용 반영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 추가된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에 대하여 1월의 제재기간 부여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개정내용 반영
- 입찰에 관한 서류에 대한 범위(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를 명확히 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
- ※ 조달청 개정건의사항 반영



**코피 멈추는 데 식초가 좋다?**

코를 틀어막을 때는 솜이나 거즈를 적셔 사용하는 게 좋다. 그런데 어떤 액체로 적시는 게 가장 좋을까? 조지 워싱턴대학의 프린시파토(Jeral Principato) 박사는 식초가 최고라고 한다. 식초에 든 산이 통증 없이 부드럽게 피를 멎게 해주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파는 울혈 제거제들은 효과가 일시적일 뿐 아니라, 콧속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코를 틀어막은 뒤에는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코의 말랑말랑한 아랫부분을 5~7분 정도 강하게 압박해 피의 흐름을 막아야 한다. 터진 혈관이 완전히 아무는 데는 7~10일쯤 걸리므로 그사이에는 코를 후벼서는 절대 안 된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

#### 4. 정정공고 근거규정 마련 (제33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등이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li> <li>-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li> </ul>

#### 개정 사유

□ 공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정공고에 관한 근거규정 및 동 정정공고에 따른 추가일수(5일 이상) 가산규정을 마련

\* 현재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정정공고의 근거규정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잔여일수에 10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토록 하고 있음

#### 5. 예정가격작성 관련 개선 (영 제7조의2제2항)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수의계약 대상 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계약인 경우로서</li> <li>-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토록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턴키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을 추가</li> </ul>

#### 개정 사유

□ 소액수의계약\* 체결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영 제7조의2)

\* 일반공사 : 2억원 이하, 전문공사 : 1억원 이하

전기공사 등 : 8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 5천만원 이하

○ '06.12.29일자 시행령 개정시 소액수의계약 대상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제한적 최저가\* 형태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토록 하였음(영 제30조제2항,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일정비율(공사 : 87.75%, 물품·용역 : 88% 등)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필요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턴키입찰과 동일하게 발주기관이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음

\* 일반공사 : 2억원이하, 전문공사 : 1억원이하

## 6. 턴키·대안입찰금액 상향조정 (제79조제1항)

현 행	개 정
○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턴키·대안입찰 실시가능 - 다만, 100억원미만의 경우에도 필요시 가능(특수공사)	○ 대상공사의 금액을 300억원으로 상향조정

### 개정 사유

□ 턴키·대안입찰 공사는 100억원 이상('92. 대형공사특례규정)에 대하여 발주가능

○ 물가상승율, 최근 발주규모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대형공사 금액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

○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범위 확대

- 300억원미만의 경우 일반공사(설계·시공분리입찰)로 발주하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

※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사항('07.4.20), '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향' 규제개혁차관회의 의결사항('07.4.26)●